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 주차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장 공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북구민대상 수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 3. 주요내용

가.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내용 신설  
(안 제5조2)

- 주차 구획(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유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공유 기업이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여 운영

나. 성북구민 대상 수상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 규정마련(별표 1)

- 성북구민대상을 받은 자는 구민대상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산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7. 9. ~ 7. 29) 결과 :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부패/인권/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희 거주자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 구획을 말한다.

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 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에서 비고란의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성북구민 포상 조례에 의해 성북구민대상을 받은자는 구민대상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150,000	80,000	400	150,000	80,000
2급지	250	4,000	100,000	50,000	250	100,000	50,000
3급지	150	3,000	80,000	40,000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3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상한선은 1일 1만원으로 한다. 단 할인혜택 차량의 경우 당일 발생한 총 시간 주차요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 구청장이 주차수요억제 등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

마. 5급지

-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1~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써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6.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8.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9.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 신 · 구조문 대비표

-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성북구 자원봉사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자원봉사증을 지참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나. 자원봉사증을 미지참한 사람 및 자원봉사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4.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2, 3, 4, 5급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70퍼센트를 할인한다.
  16.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17.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용자에게는 주차장 이용 시 한 차례만 요금을 할인하되, 할인요금은 2,000원까지로 한다.(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8.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성북구민 포상 조례에 의해 성북구민대상을 받은자는 구민대상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b>제5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b>  <u>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거주자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 구획을 말한다.</p> <p>③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적립식 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⑤ <u>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교통지도과장 임장식